

1. 개정이유

공중위생영업 변경신고 기한을 명시하고, 미용업의 지위승계신고와 변경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며, 2명 이상의 일반미용업자가 미용실 장소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용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명시 함(안 제3조의2, 별지 제5호서식)
- 나. 같은 영업장 내에 일반미용업을 하는 2명 이상의 영업자 간 일부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별표 1, 4, 7)
- 다.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변경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5, 별지 제6호서식)
- 라.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증서 사본을 매년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안 별표 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한 경우에는”을 “한 경우 또는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면서(해당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을 “변경 또는 추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4. 변경신고를 함께하려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추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명칭 또는 상호 변경은 제외한다)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을 “이발·아이론파마·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 제5조”를 “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로 한다.

제20조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1 I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않아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는 경우(해당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각 영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II 제2호마목 중 “별도로 분리”를 “분리”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4)(나) 중 “한다”를 “하고,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7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별표 1 I.제2호가목 단서에 따른 미용업자의 준수사항

- (1) 각 미용업자 간 서로 협의하여 같이 사용하는 일부 시설 및 설비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하나의 영업장에 1명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책임자는 같은 영업장의 미용업자 중 1명이 담당하거나 미용업자 이외의 자를 별도로 둔다.
- (2) (1)의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자로 하여금 같이 사용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 및 관리를 상시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적(주 1회 이상)으로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하여 영업장 내부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점검표 원본은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 (1)과 (2)에 따라서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그 책임자가 위생점검 및 관리 또는 위생관리점검표 작성 및 게시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같은 영업장의 미용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별표 7 II 제4호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별표 4 제4호차목을 위반하여 위생관리에 관한 책임자를 두지 않거나, 위생관리점검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	------	-------------	------------	-------------

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1호 중 “한옥체험업용 시설”을 “한옥체험업용 시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숙박서비스 시설로 운영하는 마을공동시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별지서식 뒤쪽 처리절차란의 “작성”을 “작성(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로 한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참고사항란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상단의 ③ 영업소 중 영업의 종류를 변경 전과 변경 후로 구분하고, 앞쪽 하단의 신고인 제출서류 중 3.을 4.로 하며,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고인 제출서류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2(변경신고)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	3. ----- -----. ----- ----- <u>한 경우 또는 일반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 하면서(해당 미용업자 명의로 각각 영업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u> 일부 시설 및 설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u>변경</u>	6. ----- ----- <u>변경 또는 추가</u>
②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u>시장·군수·</u>	②----- ----- ----- ----- ----- ----- <u>변경한 날로부</u>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③ · ④ (생략)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1.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부가가치세법」 제

8조 제8항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_____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

1. ~ 3. (현행과 같음)

4. 변경신고를 함께하려는 경우: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변경·추가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
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3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영
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
하거나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
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
께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명
칭 또는 상호 변경은 제외한다)
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업
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④ -----
----- 「부가가치세
법」 제8조제8항-----

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 ----- ----- ----- -----.
제14조(업무범위)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u>이발·아이론·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u> 및 머리감기로 한다.	제14조(업무범위) ①----- ----- <u>이발·아이론파마·면도·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개선기간) ①법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u>법 제3조제1항·법 제4조 및 법 제5조</u> 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17조(개선기간) ①----- ----- ----- --- <u>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